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99
----------	------

제출년월일 : 2015.10.15.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5.7.2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내용 신설

- 종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재산관리에 공정성을 기함 (안 제4조부터 제4조의7까지)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변경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 다. 상위 법령 내용 반영

#### ○ 대부료 등의 조정 내용 개정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하던 것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함(안 제32조)

#### ○ 조성원가 범위에 인건비 추가

- 일반재산 매각시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포함(안 제37조)

#### ○ 공유재산 운영상황(중감 및 현황, 현재액 등) 공개 규정 신설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에 따라 공개  
(안 제62조의2)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신설

-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는 연 3퍼센트(안 제65조)

라.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규정 명확화

마.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시유재산 취급 준용 규정 삭제 (안 제64조)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5. 9. 15. ~ 2015. 10. 5.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 불임 1 >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위원 각 1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참석 등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4조의5(제척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6(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계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6조 제3항 단서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를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5조를 제66조로 하고,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회계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박재근
	담당 직위·성명	재산관리담당 김영국
	담당자 성명(전화)	정재천 (481-3073)

< 불임 2 >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 4. (생략)</p> <p>〈신 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제7조 제3항-----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각1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p>

현 행	개 정 안
	<p><u>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u></p> <p><u>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u></p> <p><u>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u></p> <p><u>4. 시 소속 공무원</u></p> <p><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p><u>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u></p>

현 행	개 정 안
	<p><u>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4조의4(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u></p>
	<p><u>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p><u>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참석 등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u></p> <p><u>4. 위원이 심의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u>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u></p>
	<p><u>제4조의5(제척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u></p>
	<p><u>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p> <p><u>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u></p> <p><u>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u>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제4조의6(간사)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 관리담당 계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u></p>

현 행	개 정 안
	<p><u>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규칙」에 따른다.</u></p> <p><u>제4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b>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u>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③(생략)</p> <p><b>제24조(외국인투자기업)</b> 영 제9조제4호 · 제23조 · 제29조제1항제7호 · 제30조 · 제32조제3항 · 제38조제1항제25호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p> <p><b>제26조(대부료의 요율)</b> ①~②(생략) ③ (생략)</p>	<p><b>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p> <p>-----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24조(외국인투자기업)</b>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p> <p><b>제26조(대부료의 요율)</b>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 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 한다.
<u>제64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u>  <u>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u>	<삭 제>
<신 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99
----------	------

제안년월일 : 2015. 10. 29.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민간위원의 자격과 활동경력을 강화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 시중금리와 향후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수정함.

## □ 주요골자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서 민간위원으로 수정함. (안 제4조의2 제2항)
- 위원 자격기준에 법무사를 추가하고 해당분야 경력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4조의2 제3항 제1호)
- 제척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5 제2항)
-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시행 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로 규정함.(안 제60조, 안 제65조)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 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을 “민간위원” 으로 하며, 제3항 제1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을” 을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로 하고, “5년 이상” 을 “3년 이상” 으로 한다.

안 제4조의5의 제목을 “제척 등” 에서 “제척과 회피” 로 하고, 본문을 제1 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제65조 중 “연 3퍼센트의” 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b>&lt;신 설&gt;</b>	<p>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국장과 <u>위촉직 위원</u> 각1명으로 하되, <u>위촉직 위원</u>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p> <p>③ (생략)</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u>감정평가사</u>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2.~4. (생략)</p> <p>④ (생략)</p>	<p>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 ----- ----- <u>민간 위원</u> -----, <u>민간위원인</u> -----</p> <p>③ (원안과 같음)</p> <p>1. ----- ----- <u>감정평가사</u> 또는 <u>법무사</u> 자격을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2.~4. (원안과 같음)</p> <p>④ (원안과 같음)</p>
<b>&lt;신 설&gt;</b>	<p>제4조의5(제척 등)</p> <p>(생략)</p> <p>&lt;신설&gt;</p>	<p>제4조의5(제척과 회피)</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u>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에 서 회피할 수 있다.</u></p>
<b>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b> <p>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p> <p>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p>

